

다함께 미래로  
빛나는 제주

위대한 도민시대. 제주  
사람과 자연이 행복한

2025 뱀의해

# 빛나는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

도민과 함께, 당당한 제주의 시대

**Jeju** 제주특별자치도  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
# 목 차

## “2025년 제주, 이렇게 달라집니다”

	· 저소득·저신용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확대 .....	4
	·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인상 .....	5
	· 용암해수 기능성 식품산업 다각화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..	6
	· 이동형 수소충전소 운영 .....	7
	· 제주 부속섬 드론배송 활성화 .....	8
민생·경제	· 제주 AI·디지털 대전환 추진 .....	9
	·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사업 .....	10
	·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.....	11
	· 저탄소·고품질 감귤 생산 혁신농가 운영 .....	12
	· 제주 농산물 수도권 물류혁신 체계 구축 시범 추진 .....	13
	· 상·하수도 요금 인상 .....	14
	·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.....	15
	· 2자녀 이상 양육자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.....	16
	· 전국 최초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.....	17
	· 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.....	18
	· 제주가치돌봄 지원기준 및 서비스 확대 .....	19
복지	·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.....	20
	· 제주교통복지카드 6~12세 어린이까지 확대 발급 .....	21
	· 추자도 등 6개 유인도서 「국토외곽면섬법」 수혜대상 포함 ...	22
	· 보훈대상자 도[자체지원] 현충수당 인상 .....	23
	·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 운영 .....	23

	· 제주 재난안전문자서비스 알림톡으로 통합 전환 .....	25
	·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확대 .....	26
	·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.....	27
<b>안전·보건</b>	· 도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.....	28
	· 차량용 소화기,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.....	29
	· 소방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로 국민안전 책임 .....	30
	·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 「119패스」 시스템 도입·운영 ...	31
	·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「특별구급대」 확대 편성·운영 .....	32
	· 한라산을 안전하고 편하게, 「1100번 한라눈꽃버스」 운행 ...	33
	·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.....	34
<b>관광·문화</b>	· 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공모사업 .....	35
	· 유·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.....	36
	· 신규해녀 「정착지원금」 지급대상 확대 .....	37
	·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입·출국 절차에 무인자동심사 적용 ...	38

## 저소득·저신용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확대

**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###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

- ① 제주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포용기금 신규 사업과
- ② 서민가계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'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'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도민으로 확대

#### ○ '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' 융자지원 시행(도-NH농협은행 협약)

- (시행시기) 2024. 12. 9. ~
- (지원대상) 연소득 4,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(19~39세)
- (지원내용) 대출한도 10백만원, 대출금리의 이차차액 보전(대출기간)  
\* 이차보전 금리: 1~3등급 2.5%, 4~9 등급 3.5%

#### <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개요>

(대 상) 연소득 4,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(19~39세)  
 (대출한도) 1,000만원 (상환기간) 3년  
 (대출금리) 금융기관 결정(고정/변동금리 선택) (취급기관) 도내 NH농협은행 지점

#### ○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

- (시행시기) 2025. 상반기 ~
- (지원대상) 정책서민금융상품(근로자햇살론, 햇살론15 등) 이용 도민
- (지원내용) 이차보전금(대출원금의 3%)

#### <연도별 이차보전 지원사업 비교>

구 분	신청자격	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	지원내용
2024년 이차보전 지원	청년층 (19~39세)	근로자햇살론	대출원금의 3.5%
2025년 이차보전 지원	도민	근로자햇살론, 햇살론15 등	대출원금의 3%

#### < 문의처 >

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(☎710-2542)

##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인상

### 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·문화·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시행중인 생활임금이 2025년 변경(인상)\* 시행

\* (2024년) 시급 11,423원 → (2025년) 시급 11,710원(2.51%↑)

- (적용기간) 2025. 1. 1.~ 2025. 12. 31.
- (생활임금) 시급 11,710원
  - 월 2,447,390원(월 209시간 기준)
- (산입기준) 통상임금 등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
  - \* 생활임금보다 낮은 급여체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포함
- (생활임금 적용대상) ※ 「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  -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·출연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
  -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노동자
  -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(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,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)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

### < 문의처 >

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(☎710-2552)

## 용암해수 기능성 식품산업 다각화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

'25. 7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산업 다각화 지원시설이 '25. 7월에 준공되어 지식산업센터 내 10개 기업 입주

○ 용암해수단지 기능성 식품산업 다각화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개요

층별	세부시설 설치계획	입주기업	운영주체	
지하 및 지상 1층	· 식품 지원시설(공장) · 공용실(기계실, 전기실, 화장실 등) · 입주기업실	1,307.76㎡	5개사	제주테크노파크
지상 2층	· 입주기업실	670.08㎡	5개사	
계		1,977.84㎡	10개사	

○ (인프라 운영계획)

- (목적) 기능성식품 다각화 시설구축을 통한 미네랄 기반 제품군 확대 및 유망 기업 발굴
- (기능) 용암해수 연계 액상조미료 및 HMR 등 기능성식품 다각화 시설



<조감도>

○ (입주모집 기간) '25. 5. ~ 7.(예정)

- (대상업종) 식료품 제조업, 음료제조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

### < 문의처 >

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(☎710-2601)

(재)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용암해수센터(☎720-3081)

## 이동형 수소충전소 운영

'25. 3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수소전기승용차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충전소 도두동에서 운영 개시

### ○ 이동형 수소충전소란?

- 수소 충전에 필요한 설비가 차량에 탑재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로 수소전기승용차 기준 1대당 최대 2.5kg 수소충전 가능  
※ 1일 최대 20대까지 충전가능, 충전시간 약 3분/대

### ○ 국내 최초 그린수소 연계 이동형 수소충전소

- (수소 수급지) 구좌읍 행원리 그린수소 생산기지
- (운영지) SK행복충전 제주도개인택시 LPG충전소 내(제주시 도공로 141)



< 이동형 수소충전소 사진 >

< 문의처 >

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(☎710-2531)

## 제주 부속섬 드론배송 활성화

'25. 3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제주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으로 도내 부속섬 드론 배송 확대

### ○ 드론 배송 사업이란?

- 16시 이후 배편이 없는 부속섬에 제한된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

### ○ (추진현황)

- 2023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가파도 드론 배송 실증
- 2024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가파도, 마라도, 비양도 배송 상용화 단계 실증  
※ 배송 230회로 주민 생활편의 개선

### ○ (사업기간) '25년 3월 ~ 12월

### ○ (사업내용)

- 부속섬(가파도, 마라도, 비양도) 드론 배송 상용화



- 배 운항 시간(16시) 이후 ~ 20시까지
- 주민 의견 반영 배송 요일(목~금→매일), 및 배송 무게(3k→5kg 이상) 확대, 배송함 및 배송 물품 확장 등
- 부속섬 드론 배송 인프라 조성(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)

### < 문의처 >

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(☎710-4811)

## 제주 AI·디지털 대전환 추진

제주도민의 일상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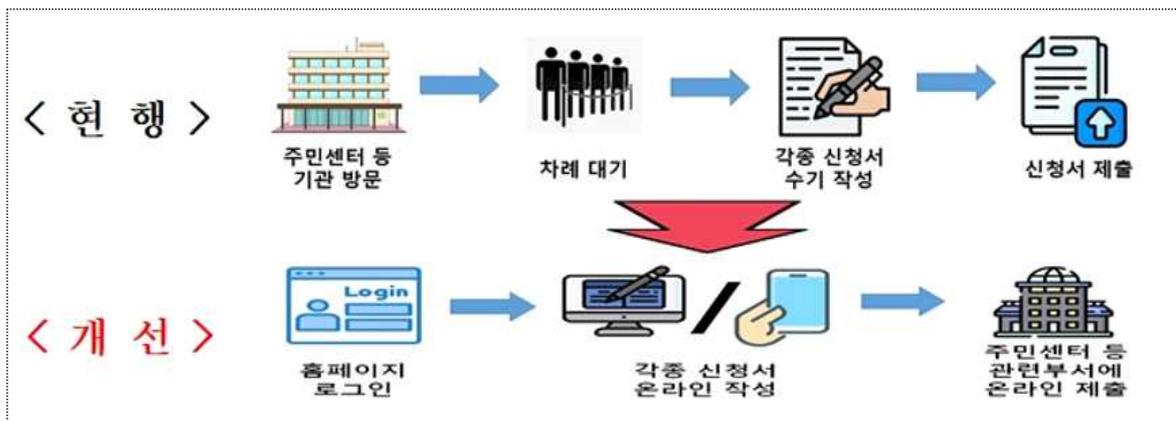
AI·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통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지속성장 동력을 극대화

### ○ 디지털 대전환이란?

- 우리 생활의 다양한 요소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를 상호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

### ○ 주요 추진 내용

- (현금·환전 없는 사회 추진) 도민·관광객 편의 증진 및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
  - \* 도내 기 보급 중인 결제 인프라(제로페이 등)와 탐나는전 연계 (~25 말)
- (의료 사각지대 극복) 디지털 원격 협진으로 도심병원과 연계해 의료취약 지역 의료서비스 혁신
  - \* 도내 전 지역 보건진료소 대상 ICT 활용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사업 확대 추진(25.1월~)
- (스마트 행정 서비스) 주민센터 방문 없이 24시간 온라인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
  - \* 자필서명 민원서식을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처리 방식으로 전환(25.3월~)
  - \*\* (사용예시) 부양의무자 금융제공동의서, 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, 장수수당 신청서



### < 문의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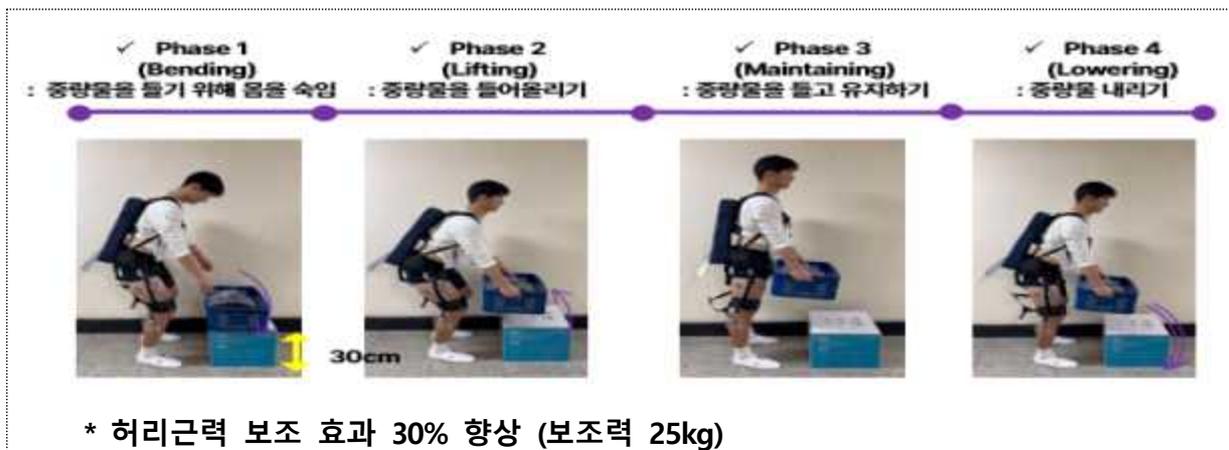
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빅데이터팀(☎710-2581) \* AI·디지털 대전환 총괄  
 도 혁신산업국 정보정책과 정보서비스팀(☎710-2391) \*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

##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개발·보급

'25. 12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감귤·양배추·당근 등 제주 농업 맞춤형 '첨단 ICT 웨어러블 허리근력 보조 로봇' 개발·보급 추진

-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개발·보급 사업이란?
  -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 작업시 허리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·보급 추진
- (사업기간) '25년 1월 ~ 12월
- (사업내용)
  - 농업인 맞춤형 첨단 ICT 웨어러블 허리근력 보조 로봇 개발(40대)
    - ※ 감귤당근 등 컨테이너 취급, 양배추 커팅, 마늘양파 등 뽑기, 비료 이송 작업에 맞게 개발



- 웨어러블 로봇 농가 실증 및 임대·보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
→ '25년 12월부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임대 보급 추진

### < 문의처 >

도 혁신산업국 정보정책과 정보전략팀(☎710-2341)

## 「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」 지원 확대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품목을 감귤에서 키위까지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한시적 완화

- (사업명)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
- (사업대상) 생산유통통합조직(제주조공법인, 제주감귤농협) 참여 조합원
- (주요사업) 재해예방시설, 원지정비, 노후하우스 개보수 등 15개사업
- '25년 달라지는 사항은?
  - 지원품목 확대: 감귤, 키위(시범) → 감귤, 키위(본사업)
  - 신청자격 완화: (당초) 5년 이내 출하실적 조합원  
(변경) 출하실적 없는 조합원('25년까지)
  - 재해예방 강화: (기존) 보온커튼 등 8개 사업  
(확대) 9개\* 사업(재해예방시설 차광막 추가)
    - \* 관수관비, 보온커튼, 난방기, 방풍망, 송풍팬, 비상발전기, 환풍기, 자동개폐기 + 차광막
  - ※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시설 우선 지원
  - ※ 재해예방시설에 한해 신규 과원('20년 이전 조성)도 '26년까지 지원
- 개별사업 개선
  - 원지정비사업: 묘목 구입·식재의 경우 농가 선택(업체 일괄 또는 농가 자체)
  - 관수시설: 기존 관수시설 + 자동 관수·관비 시설 추가
  - 노후하우스: 보조 여부 관계없이 20년 경과된 노후하우스 지원 가능

### < 문의처 >

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(☎710-3261)

## 저탄소·고품질 감귤 생산 혁신농가 육성

### 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저탄소 농업실천 기술인 격년결실 재배를 통한 농약, 화학 비료 사용 절감 및 소비자 선호 증소형과(2S~M) 중심으로 생산체계 전환

- 「격년결실 재배법」이란?
  - 감귤원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휴식년과 결실년을 교차로 설정하는 재배 기술로 휴식년에는 전정과 적과에 의해서 무착과 상태를 유도하고 결실년에는 수관전체에 과실을 결실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
- 「격년결실 재배법」의 효과는?
  - 결실년에 고품질감귤(2S~M)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음
  - 2년에 1회 수확으로 감귤원 관리가 쉬워 생산비 투입 비용 감소
  - 저탄소 재배 기술로 탄소 배출 억제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도모
- (사업명)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 혁신농가 지원(신규사업)
- (사업비) 100백만원(자체재원 100) ※ 보조율 100%
- (사업대상) 노지감귤 재배농가 중 격년결실을 희망하는 농가
- (사업내용) 감귤 미수확에 따른 농가소득 부재에 대한 생산비 일부 보전
- (지원단가) 2,000천원/ha ※ 지원한도: 농가당 1ha 이내

### < 문의처 >

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(☎710-3261)

## 제주 농산물 수도권 물류혁신 체계 구축 시범 추진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제주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시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배송과 클레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 물류센터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직거래 시장 확대

### ○ 「수도권 물류센터」의 역할은?

- 농산물 소분·저온저장, 적정 재고 유지 및 효율적인 배송\* 업무 추진

\* (익일 또는 당일배송) 예상 주문량 센터 보관 → 선별, 소분, 재포장 → 통합물류 상품 발송

구 분	현 재	개 선
발 주 체 계	·D-2 발주	·D-1, 당일발주
거 래 처	·도매시장, 유통업체 등 한정	·중·소형마트, 식자재업체 등 신규 직거래처 확대
거래처관리	·재고관리, 클레임 대응 한계	·물류센터 중심 재고관리, 급발주, 클레임 대응력 강화
도 매 시 장	·기준가격 이하 낙찰시 경매 불낙 한계	·경매 불낙물량 센터 입고 및 재작업(재포장) 후 공급

○ (사 업 명) 제주 농산물 수도권 물류혁신 체계 구축 시범사업(신규사업)

○ (사 업 비) 444백만원(자체재원 400, 자부담 44) ※ 보조율 90%

○ (사업대상) 지역 농감협을 통해 수도권으로 제주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

○ (사업내용) 수도권 물류센터를 통해 출하 시 지선\* 물류비의 90% 지원

\* 수도권 물류센터 ~ 소비처(서울)

### < 문의처 >

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(☎710-3271)

## 상·하수도 요금 인상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'25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·하수도 요금 인상  
- (상수도) 5% 인상 (하수도) 20% 인상

### □ 요금 인상 필요성 및 정책방향

- 상하수도 사업이 사용자부담 원칙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,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준으로 만성 적자경영 및 적기 시설투자 곤란
- 이에 “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” 를 고려하여, 단계별 요금인상으로 점진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의 요금 현실화 추진  
- 도의회 의결( '21.9.7.)을 거쳐 2025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 결정\*

\* 3단계('22, '23, '25년) 업종별 요금 인상: 단계별 평균 5%(상수도), 20%(하수도)

※ (근거) 「제주특별자치도수도 급수 조례」, 「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」

### □ 주요 내용

상수도(단위: 원, m<sup>3</sup>)

구분	사용량(월)	현행	2025년
업종별			
가정용	톤당	510	540
일반용	0-20	820	860
	21-100	1,720	1,810
	101이상	2,760	2,900
대중탕용	0-200	830	870
	201-500	1,480	1,550
	501이상	1,880	1,970
농수축산 용 및 산업용	0-30	460	480
	31-100	480	500
	101이상	510	540

하수도(단위: 원, m<sup>3</sup>)

구분	사용량(월)	현행	2025년
업종별			
가정용	톤당	600	720
일반용	0-20	620	740
	21-100	1,130	1,360
	101이상	2,080	2,500
대중탕용	0-200	770	920
	201-500	850	1,000
	501이상	980	1,180
산업용	톤당	880	1,060

※ 적용시기: 2022년(기시행), 2023년(기시행), **2025년 1월 납기 고지분부터**

### < 문의처 >

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(☎750-7730)

##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

**'2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제주청년센터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·운영을 통해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 추진

### ○ 청년센터란?

- 청년과 청년, 청년과 사회를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, 청년정책 발굴, 청년단체 네트워킹, 청년종합정보 제공

( 제주청년센터 · 청년다락 현황 )

#### 제주청년센터

제주시 중앙로 53, 5-7층

#### 청년다락 1호점

제주시 연삼로 386-1, 5층

#### 청년다락 2호점

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 
서귀포 평생학습관 1층

#### 청년다락 3호점

서귀포시 대정읍  
동일하모로 79번길 2

+

( '25 개소예정 )

**서귀포시  
청년지원센터**

#### 청년다락 4호점

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

#### 청년다락 5호점

제주시 노형11길 5-6, 3층

○ (조성위치)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2, 2~3층

○ (조성면적) 304.88㎡

### ○ (주요시설)

- (2층) 사무실, 회의실, 면접정장 대여룸, 상담실 등
- (3층) 오픈라운지(강당), 청년활동공간 등 등

○ (개 소 일) '25년 상반기(예정)

**< 문의처 >**

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(☎710-8821)

## 2자녀 이상 양육자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

**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「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」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

### ○ (추진배경)

- 최근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,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

※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 2자녀로 확대('25.1.시행)

### ○ (감면 내용)

#### 【확대】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감면

- ▶ 대상 : 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,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) **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**
- ▶ **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할 목적으로** 취득하는 주택 취득 시 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)
- ▶ 감면세목 및 세율
  - ① 3자녀 이상 : 취득세50%(300만원 한도) 감면
  - ② 2자녀 이상 : 취득세30%(180만원 한도) 감면
- ▶ 추정규정
  - ① 취득후 3개월이내 거주안할 시
  - ② 혼인 등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도외 이주하거나 해당주택 매각·증여시 (배우자 이전 제외)
  - ③ 취득후 3개월이내 1가구 1주택 미해당 시

#### < 문의처 >

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(☎710-6881)

## 전국 최초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「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」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국 최초로 시행

### ○ 가족친화인증이란?

- 가족친화제도\*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\*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

#### 「가족친화 인증절차 세부일정」

1	2	3	4	5	6
사업공고	권역별 설명회	인증신청	서류심사 및 현장심사	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	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
(4월)	(4~6월)	(4~6월)	(6~8월)	(11월)	(12월 예정)

### ○ (감면 내용)

#### 【전국 최초】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

- ▶ 대상 : 「가족친화법」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 ▶ 감면세목 및 세율
  - ① 해당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% 경감
  - ②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(사업소분 및 종업원분)
- ▶ 추정규정 :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

#### < 문의처 >

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(☎710-6881)

## 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

'25. 1~2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모성보호제도(출산휴가·육아휴직 등) 사용자의 소득지원 강화, 사용기간 확대 및 사업주 지원금 확대 지원

### (근로자 지원)

(금액 단위: 만원)

시기	제도	기존	개선	시기
임신기	임신기 시간단축	12주 이내, 36주 이후	12주 이내, <b>32주 이후</b> (고위험 임신부는 쏘기간)	'25.2.23. (육아3법)
	난임휴가	3일	<b>6일(지원 2일)</b>	
출산시	출산휴가	90일	90일( <b>미숙아 출산시 100일</b> )	
	배우자 출산휴가	10일	<b>20일</b>	
육아기	육아기 시간단축	최대 2년 (1년+육휴 미사용기간)	<b>최대 3년</b> (1년+ <b>2×육휴 미사용기간</b> )	
		8세(초2)	<b>12세(초6)</b>	
		최소 사용기간 3개월	최소 사용기간 <b>1개월</b>	
	육아휴직	부모 각각 1년	<b>부모 각각 1년 6월</b> (부모3월 이상 사용, 한부모, 중증 장애아 부모)	
* 부모 합산 시 2배	사후지급금(25%)	월 150 연 1,800	<b>폐지</b>	
		일반	<b>1~3월 250 4~6월 200 7월~160</b> 연 <b>2,310(+510)</b>	
		6+6	<b>1200 2250 3300</b> <b>4350 5400 6450</b>	
		특례	<b>7~150 → 연 2,850</b> <b>7~160 → 연 2,960(+110)</b>	
				'25.1.1. (시행령)

\* 6+6특례: 출산 후 18개월 이내+부모 모두(동시, 순차) 사용시 첫 6개월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

### (사업주 지원)

(금액 단위: 만원)

제도	기존	개선	시기
대체인력 지원금	월 80(출산휴가+육아기 시간단축)	<b>월 120</b> (육아휴직, 파견사용 추가)	'25.1.1. (시행령)
동료업무 분담지원금	월 20(육아기 시간 단축)	<b>월 20</b> (육아휴직 추가)	
남성육휴 인센티브	-	<b>월 10</b> (남성육휴 허용 1~3사례)	'25.1.1. (고시)

### < 문의처 >

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고용지원팀(☎710-4460)



## 제주가치돌봄 지원기준 및 서비스 확대

### '25. 1. 1.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## 제주가치돌봄 지원기준 및 서비스 확대로 도민의 돌봄부담 경감

※ **틈새돌봄** ('24년) 572만원이하 → ('25년) 609만원이하, **긴급돌봄** ('24년) 859만원이하 → ('25년) 914만원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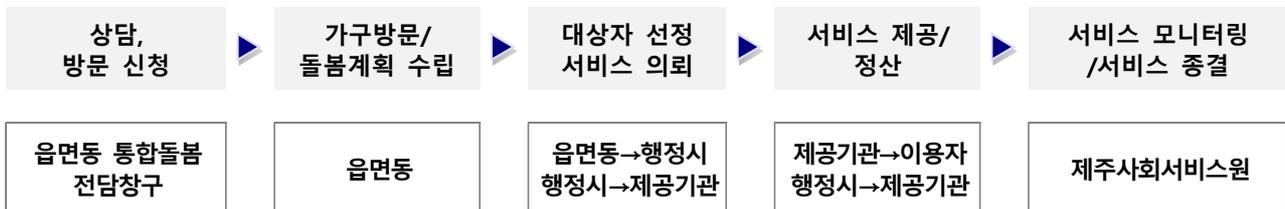
- (제주가치돌봄 서비스란?)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긴급상황까지,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
- (지원대상)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,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
- (지원서비스) 돌봄공백시 틈새돌봄, 위기상황시 긴급돌봄
- (서비스 세부 내용, 지원기준, 지원한도)

서비스명		서비스 내용	지원기준 (기준중위소득)	지원한도
틈새돌봄	생활 돌봄	① 일시재가 ② 방문목욕 ③ 식사지원 ④ 동행지원 ⑤ 운동지도	100% 이하	1인당 연 150만원 이내
	주거 편의	⑥ 방역소독 ⑦ 간편집수리 ⑧ 대청소 ⑨ 안전편의시설 설치		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
긴급돌봄		일시재가	150% 이하	1인당 1회 72시간 이내

\* 4인가구 기준 틈새돌봄 609만원 이하, 긴급돌봄 914만원 이하

\*\* 기준중위소득 초과자 전액 자부담 이용 가능

- (신청상담) 주소지 읍면동 방문(본인 및 가족 등), 제주가치돌봄 상담콜(☎1577-9110)
- (지원절차) 읍면동 **돌봄계획 수립**, 서비스 제공기관 **서비스 신속 제공**



### < 문의처 >

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(☎710-4362)

제주가치돌봄 상담콜(☎1577-9110)

##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

**'25. 1. 1.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(6.42%)로 인상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

※ 생계급여 4인기준 (2024년) 183만 3,572원 → (2025년) 195만 1,287원

○ (지원대상)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
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\* 이하

\* 생계급여 32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8%, 교육급여 50%

구 분		생계급여	의료급여	주거급여	교육급여
선정기준	'24년	183만원	229만원	275만원	286만원
소득인정액	'25년	<b>195만원</b>	<b>243만원</b>	<b>292만원</b>	<b>304만원</b>

②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
➔ 생계·주거·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\* 단,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재산(일반재산 12억원 초과) 또는 고소득(연 1.3억원 초과)의 경우 지원제외

\*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중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가구는 부양의무 제외

○ (달라지는 사항)

① 2025년 중위소득 6.42% 인상

- 4인기준 ('24년) 572만원 → ('25년) 609만원 (증 37만원)

②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

- 4인기준 ('24년) 183만원 → ('25년) 195만원 (증 12만원, 6.56%)

### < 문의처 >

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(☎710-2862)

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(☎710-2533)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(☎710-6514)

## 제주교통복지카드 6~12세 어린이까지 확대 발급

### 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어린이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 
'25. 1. 1부터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인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시행

- (발급대상)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~12세 어린이  
※ 2019년생은 생일 이후 신청가능하며, 2012년생은 생일 이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
- (신청장소) 제주도 내 모든 농협 영업점(축협, 돈협, 감협, 중앙, 단위 등)
- (신청인) 어린이의 법정대리인(부모 및 법정후견인)
- (준비물)
  - ① 신청인의 신분증
  - ② 어린이 도장
  - ③ 가족관계증명서(어린이와의 가족관계표시)
  - ④ 기본증명서(상세, 어린이 기준)  
※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 농협 영업점에 문의
- (카드수령) 신청한 영업점에서 즉시 수령
- (카드혜택) 도내 버스요금 면제  
※ 급행버스 및 공항리무진 제외
- (유의사항)
  - 카드 최초 발급비용 무료 \* 재발급 시 비용 발생
  - 타인에게 양도·대여 불가하며, 부정사용 시에는 일정기간 카드사용 정지

### < 문의처 >

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(☎710-4327)

## 추자도 등 6개 유인도서가 「국토외곽면섬법」 수혜대상에 포함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행안부 「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(약칭: 국토외곽면섬법)」 지원 대상에 추자도 등 6개 유인도서 포함

### ○ 「국토외곽면섬법」이란?

- 지리적·역사적 특수성이 있고,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면섬의 거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영토수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('24.1.17.)

### ○ (정책대상) 비양도, 우도, 상추자도, 하추자도, 가파도, 마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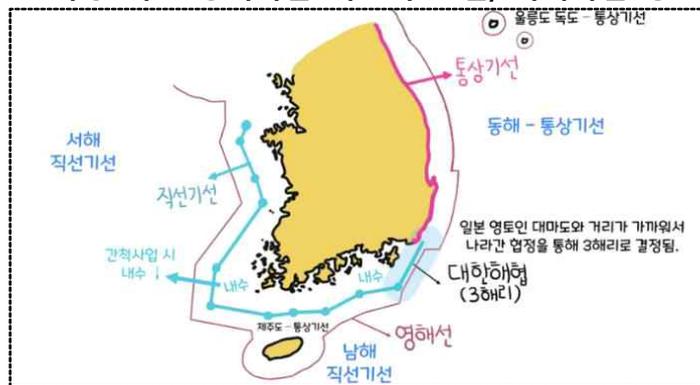
- \* 육지에서 50km 이상 섬(제주 본도(本島) 제외),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 섬, 항로 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지정된 섬(전국 43개섬)

### ○ (시행시기) '25. 1. 17.부터

### ○ (주요내용) 보조금 등의 특별지원,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,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, 기반시설 설치 등, 불법조업 방지 지원,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

- \* 행정안전부의 「국토외곽면섬 종합발전계획」 수립, 확정 후 세부추진 예정

<지정 기준-영해기점 직선기선 섬, 최외곽섬 등>



### < 문의처 >

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(☎710-3257)

## 보훈대상자 도[자체지원] 현충수당 인상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① 현충수당 (년 1회) : 15만원 → 20만원 (+5만원 인상)
- ② 호국수당 (년 1회) : 15만원 → 20만원 (+5만원 인상)
- ③ 지급시기 : 매년 6월 5일 → 매년 6월 1일 (호국보훈의 달 지급)

-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(유족)에 대한 도 자체지원 보훈수당(현충수당, 호국수당) 지원액 인상  
※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 공포 (24.11.11.)

##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 운영

'25. 2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탁병원 지정 확대 운영  
⇒ 보훈 위탁병원 지정 운영(20곳) \*2025. 2월 지정 운영 예정 포함

- 거주지 인근에서 “자주, 쉽게”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확대  
→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근접 의료가 가능토록 서비스 접근성 및 의료 안전망 강화
- (위탁병원 지정 현황) 18개소 (2024.12월 기준)  
+ (2025. 2월) 2개소 추가 지정 운영 예정

< 문의처 >

도 보훈청 보상과(☎710-8415, 8425)

참고

보훈 위탁병원 현황

1		제주대학교병원	064-717-1114	
2		제주한라병원	064-740-5000	
3		제주의료원	064-720-2222	
4	제 주 시	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	064-720-2222	
5		늘봄재활요양병원	064-752-0022	
6		문의원(한림)	064-796-0160	
7		동산내과의원(이도2동)	064-723-0808	
8		연세차내과의원(외도동)	064-747-2375	
9		서울아산정형외과의원(조천읍)	064-782-8275	
10		서 귀 포 시	서귀포의료원	064-730-3000
11			서귀포열린병원	064-762-8001
12			서연의원(서귀동)	064-763-4100
13	최선365의원(성산)		064-784-6333	
14	서울삼성재활의학과의원(대정)		064-792-8887	
15	남원의원(남원)		064-764-4156	
16	해비치의원(표선)		064-787-6780	
17	연합치과의원		064-762-2275	
18	안덕의원		064-794-0906	

(‘25. 2월) 2개소 추가 지정·운영 예정

## 제주 재난안전문자서비스 알림톡으로 통합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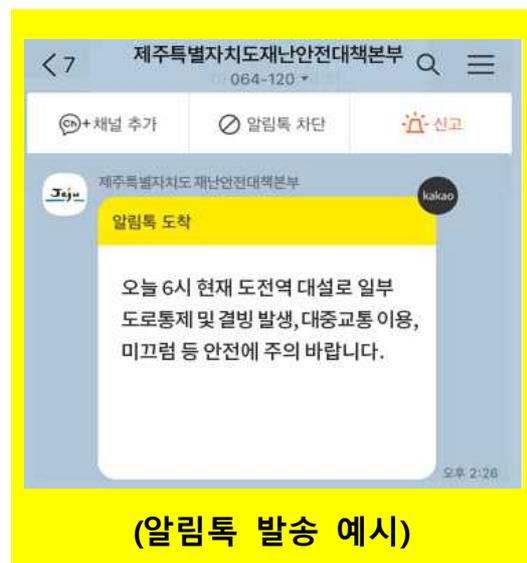
'25. 1. 1.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(기존) 재난안전문자 송출 시 일반문자와 알림톡(카카오) 병행 운영
- (변경) 알림톡으로 통합 전환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확대

### [제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]
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법」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 재난안전문자 송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(운영기간) 2017. 1. ~ 현재
- (가입방법)
  -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가입 (<https://bangjae.jeju.go.kr/>)
  - 읍면동 주민센터, 도 자연재난과 방문 신청(알림서비스 동의서 제출)
- (송출내용) 기상특보, 재난대응행동요령, 수어영상, 생활민원안내(정전, 단수, 교통통제 등)
- (송출형식) 알림톡(카카오톡)
  - 일반문자서비스는 종료되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만 발송
  - 카카오톡 미사용자는 기존 문자서비스로 발송



### < 문의처 >

도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(☎710-3653)

##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확대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내 모든 보건진료소(48곳)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가 확대

### ○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란?

-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원격지 의사 (지역의료기관, 보건소·지소) ↔ 현지 의료인(보건진료소)간 원격협진(환자진단·치료·상담, 복약지도 등)서비스 제공하는 사업

### ○ (사업대상)

- 의료취약지 거주자 중 정례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(재진환자)\*
  - \* 6개월 이상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는 의료인(의사)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
  - \* 주로 고혈압, 당뇨병, 초기 치매, 관절염 등 이환
- 대상환자 기준 내 거동불편자, 고령자, 독거노인,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(초진인 경우 대면진료 원칙)

### ○ (사업기간) 2025. 1월~12월

### ○ (서비스 수행)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(48곳)

### ○ (수행절차)



### ○ (신청·문의) 주소지 보건진료소 방문 문의

#### < 문의처 >

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(☎710-2911)

##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확대 시행

- (사업기간) 2025. 1월 ~ 12월
- (지원대상)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(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)

(종전) 65세 이상  
1960. 1. 1. 이전 출생자

(확대) 50세 이상  
1975. 1. 1. 이전 출생자

※ 1회 접종에 한함(과거 접종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)

- (접종기관) 도내 보건소(6개소) 및 보건지소(11개소)

	보건소	보건지소
제주시	제주보건소	제주시제주추자보건지소
	제주시동부보건소	제주시동부구좌보건지소
	제주시서부보건소	제주시동부우도보건지소
서귀포시	서귀포보건소	제주시동부조천보건지소
	서귀포시동부보건소	제주시서부애월보건지소
	서귀포시서부보건소	제주시서부한경보건지소
	서귀포시동부보건소	서귀포시중문보건지소
	서귀포시서부보건소	서귀포시강정보건지소
	서귀포시동부보건소	서귀포시동부성산보건지소
	서귀포시서부보건소	서귀포시동부표선보건지소
		서귀포시서부안덕보건지소

- (지원내용)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 무료 지원

### < 문의처 >

제주시 보건행정과(☎728-4010)    서귀포시 보건행정과(☎760-6085)  
 제주시 서부보건소(☎728-4122)  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(☎760-6762)  
 제주시 동부보건소(☎728-4207)  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(☎760-6274)

## 도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**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

○ (사업기간) 2025. 1월 ~ 12월

○ (지원대상)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

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2.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
○ (신청기관) 도내 보건소(6개소)

※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

○ (지원내용)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지원

※ '25년 신규 실시

※ (주의사항)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### < 문의처 >

제주시 제주보건소(☎728-4092)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(☎760-6082)

제주시 서부보건소(☎728-4162) 서귀포시 동부보건소(☎760-6107)

제주시 동부보건소(☎728-4208) 서귀포시 서부보건소(☎760-6232)

## 차량용 소화기,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차량용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

- (관련근거)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\*  
\* '21. 11. 30. 개정 후 3년 유예기간 거쳐 '25. 1. 1.부터 의무화
- (시행일) 2024. 12. 1.
- (주요내용)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제작, 수입 및 소유권 변동 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

(종전) 7인승 이상



(확대) 5인승 이상

- (설치기준) 승용차 \* 1단위 (0.7kg) 1개 이상, (생산규격) 0.7kg / 1.5kg / 3.3kg

구분	승용차	승합차				화물 및 특수		사진
		경형승합	15인이하	16~35인	36인이상	중형	대형	
설치 기준	1단위 1개 이상	1단위 1개 이상	2단위 1개 이상	2단위 2개 이상	3단위 1개 + 2단위 1개 이상	1단위 1개 이상	2단위 1개 이상	

※ 2024. 12. 1. 이전 대상은 자동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 및 승합, 화물차, 특수차에만 설치

※ 2024. 12. 1. 이후 제작·수입·판매되는 자동차(적용)

※ 2024. 12. 1. 이후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(적용)

자동차검용표시

미표시 소화기는  
적법한 차량용  
소화기 아님

### < 문의처 >

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(☎710-3541)

## 소방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로 국민안전 책임

**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**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소방대상물 규모·소방시설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기준이 변경**

- (관련근거)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
  - (시행일) 2024. 12. 1.
  - (주요내용)
    -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, 이 경우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,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 수료
    -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중에서 소방·피난·방화시설 관리에 한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고,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
- ※ (대행가능 대상) 1급(연면적 1만5천㎡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), 2급, 3급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① 배치인력 자격	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	대상 등급,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(고/중/초급) 자격자 배치(전문성 강화)
② 1일 업무량	업무대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	1일 배점합산 8점 초과 금지 (1명의 1일 대행 업무량 기준에 따라 산정) * 대상물 연면적, 공동주택 세대규모에 따라 차등
③ 업무대행 점검항목	업무대행 점검항목 부재	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
④ 업무대행 횟수	업무대행 점검횟수 부재	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(관계인·기술인력 각각 서명, 책임성 강화)
⑤ 표준 계약서	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부재	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마련(권고) *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공지

### < 문의처 >

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(☎710-3541)

##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 「119패스」 시스템 도입·운영

‘25. 4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위급상황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 자동출입을 위한 「119패스」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(골든타임 확보)

- (추진배경)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119긴급구조 신고가 지속 증가하나 공동주택 특성상 아파트 거주민 외 불특정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, 관계인 부재 또는 신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 발생
- (운영대상) 아파트 등 공동주택\* 중 주민동의 허가 대상  
\* 공동주택: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
- (주요내용) 공동주택 내 긴급출동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또는 신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비밀번호 없이 RFID 카드 태그 방식으로 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
- (추진체계)

공동현관 자동개폐시스템  
119패스 시스템 도입·운영  
취지 안내

▶ 입주민 대표회의  
사전동의 요구

▶ 사전동의 완료 시  
RFID 카드 등록

- (추진일정) 현황조사·주민동의(1~3월) → 시스템 도입(3월) → 운영(4월)

### < 문의처 >

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대응조사팀(☎710-3551)

##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「특별구급대」 확대 편성·운영

### '25. 2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구급대원이 확대된 업무 범위를 시행할 수 있는 「특별구급대」 확대 운영으로 신속하게 고품질 응급서비스 제공  
\* (기존) 5개대 → 9개대

#### ○ 「업무범위 확대 특별구급대」 사업이란?

-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,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제고

비고					
출동	①심정지	②심인성 흉통	③중증외상	④아나필락시스	⑤응급분만
처치	에피네프린 투여 (정맥주사)	12유도 심전도 측정	진통제 투여	에피네프린 투여 (자동근육주사)	탯줄 결찰, 절단

#### ○ (운영일시) 2025. 2. 1.

#### ○ (확대편성) 총 4개대 \* 수요분석 상황 등 고려 선정 운영

※ 現 제주 지역 특별구급대 운영 현황: 5개대 (이도, 외도, 대신, 한림, 성산)

#### ○ (탑승대원) 3인 출동조 운영

\* 특별교육을 이수한 전문 자격자(1급·간호사) 2인 이상 탑승

### < 문의처 >

도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구급팀(☎710-3591)

## 한라산을 안전하고 편하게, 「1100번 한라눈꽃버스」 운행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아름다운 한라산의 설경을 주차 걱정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 
1100번 한라눈꽃버스 운행

### ○ 한라눈꽃버스 운행개요

노선번호	운수회사	운행대수/횟수	운행경로	운행기간
1100번	관광지순환 버스(주)	4대, 24회	제주터미널-한라병원- 어리목-1100고지- 영실지소(왕복)	2024.12.21.~ 2025.2.23. (주말 및 공휴일)

※ 이용요금: 성인 1,150원, 청소년 850원

### ○ 한라눈꽃버스 운행경로



### < 문의처 >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버스정보시스템(<http://bus.jeju.go.kr/>) 또는  
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(☎710-4336)으로 문의

##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시스템 구축

### 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민선 8기 공약인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

- 「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시스템 구축」 사업이란?
  - 지역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하여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, 융복합시대 지역예술인 지원, 예술인 복지기금 적립('26년까지 100억원) 등을 하는 사업
- (사업기간) 2025년 1월 ~ 12월
- (지원대상)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제주 예술인
- (지원사업)
  -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(확대) : 사업비 3억원 ⇒ 3.6억원\*
    - \* 1인당 2백만원씩 총 180명
  -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(신규) : 사업비 0.9억원\*
    - \* 1인당 10백만원씩 총 9명
  - 예술인 도외 교통비 지원사업(신규) : 사업비 0.6억원\*
    - \* 1인당 30만원씩 총 200명

### < 신규사업 관련 향후계획 >

-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공모 및 홍보 : '25. 3. ~ 11.
- 제주예술활동 교통비 지원사업 공모 및 홍보 : '25. 3. ~ 11.

### < 문의처 >

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(☎710-3416)

## 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공모사업

### 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생애주기·경력단계별지원체계 확립(청년 5년미만, 기성 5년~25년미만, 원로 25년 이상), 읍면지역 민간 문화시설 및 유희공간 활성화를 위한 가산점 부여, 민간 예술인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·도립 소속 예술인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

- 「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공모」 사업이란?
  - 지역 문화예술인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술지원·생활문화예술활동,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
- (사업기간) 2025년 1월 ~ 12월 ※ (1차 공모) 2024. 12. 16. ~ 2025. 1. 6.
- (지원대상)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제주 예술인, 제주 소재 예술단체
- (지원사업) 예술활동지원(39억원)
  - ※ 청년 5~9백만원, 기성 4백~1천만원, 원로 1천만원
- (달라지는 사항)
  - (지원체계 정비)

지원자격	2024		2025	비고
청년	5년 내외	⇒	5년 미만	선택적 집중 지원
기성	30년 미만	⇒	25년 미만	
원로	30년 이상	⇒	25년 이상	경력 기준 완화

- (창작 공간 다양성 확보) 사업 수행 공간이 읍면 소재일 경우 가산점(1점) 부여
- (연속지원 보장) 성과 점검 결격사유 없으면 2차년도 지원
- (지원배제) 국립·도립 문화예술 기관·단체 및 소속 예술인, 국립·도립 문화예술 기관(단체)의 단원(예술인)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

### < 문의처 >

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(☎710-3416)

## 유·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

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'유·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'의 지원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10만 5천원으로 확대

- 「유·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」 사업이란?
  - 저소득층 유·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
- (사업기간) 2025. 1. ~ 12.
- (지원대상) 5~18세 유·청소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(자활근로, 장애, 본인부담경감, 확인서 발급, 법정 한부모가족)
  - 학교·가정·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(경찰청 추천)
- (지원내용) 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 지원
  - (종전) 10만원 ▶ (변경) 10만 5천원
- (사 용 처) 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\*
  - \*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svoucher.kspo.or.kr)에서 가맹시설 확인 가능

### < 문의처 >

도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(☎710-3451)

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(☎728-3261)

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(☎760-3601)

## 신규해녀 「정착지원금」 지급대상 확대

### '25. 1월 이렇게 달라집니다

「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개정('24.8.2.시행)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('24.11.20.)으로 '25년 1월 2일부터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(만 40세 미만→ 만 45세 미만)하여 지원사업 시행

#### ○ 신규해녀 「정착지원금」 지원 사업이란?

- 제주 해녀들이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지원
- 해녀어업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등에 대한 해소 등을 통해 신규해녀의 어촌계 가입 유도 및 어촌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어업기술을 익히는 일정기간동안 소득보전 지원

#### ○ (사업기간) 2025. 1월 ~ 12월

#### ○ (지원대상) '24년 8월 2일 기준 만 45세 미만 신규현직해녀(해녀증 발급자에 한함)

#### ○ (지원금액) 신규해녀 1인당 월 50만원(3개년간 지급)

#### ○ (개정 주요내용)

구 분		당 초	개 정	개정일
조 례	연령	신규해녀 40세미만	신규해녀 45세 미만	'24.08.02.
시행규칙	지급기간	어촌계 가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	해녀증을 발급받고 정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36개월까지	'24.11.20.

### < 문의처 >

도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(☎710-3981)

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(☎728-3361)

서귀포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(☎760-2741)

##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입·출국 절차에 무인자동심사 적용

**'25. 10월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크루즈 승선 외국인 관광객의 입·출국 절차 이행시간 단축 및 제주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(Auto Gate) 도입

- 「크루즈 무인자동심사대(Auto Gate)」란?
  - 크루즈선 여객터미널에서 출입국심사 시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여권 관독 및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
  - \* 전국 최초로 크루즈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인자동심사대 도입
- (적용시기) '25.10월(예정)
- (설치대수) 총 38대(제주항 10대, 강정항 28대)
- (기관협력) (법무부)장비·시스템 설치, (도)기반공사(전기, 통신, 건축 공사)
- (기대효과) 심사 소요시간 50분 이상 단축(약 50% 이상)
  - (제주항) 3천명 기준, 유인심사 125분 <sup>50분 ↓</sup> → 유인+무인심사(10대) 75분
  - (강정항) 5천명 기준, 유인심사 167분 <sup>91분 ↓</sup> → 유인+무인심사(28대) 76분

### < 문의처 >

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(☎710-3226)

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(☎710-6367)

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(☎741-5507)